#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17 발의연월일: 2020. 12. 22.

발 의 자:이병훈·송갑석·신영대

주철현 · 김승원 · 도종환

양정숙・이상헌・박 정

윤관석 · 황운하 · 남인순

이원택·이수진(비) 의원

(14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인 "직상 수급인"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"바로 위 수급인"으로 바꾸고, "속행"을 "계속 진행"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(안 제12조 및 제35조).

법률 제 호

##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"직상(直上) 수급인"을 "바로 위 수급인"으로, "직상 수급인"을 "바로 위 수급인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직상 수급인"을 "바로 위 수급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직상 수급인"을 "바로 위 수급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직상 수급인"을 각각 "바로 위 수급인"로 한다.

제35조 본문 중 "속행할 수 있다"를 "계속 진행할 수 있다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	제12조(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
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) ①	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) ① -
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	
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	
우에 하수급인(下受給人)이 <u>직</u>	ਜੁ-
<u>상(直上) 수급인</u> (도급인을 포함	로 위 수급인
한다)의 귀책사유로 대중문화예	
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	
스태프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못	
한 때에는 그 <u>직상 수급인</u> 은 그	<u>바로 위 수급인</u>
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에 대	
한 책임을 진다. 다만, <u>직상 수</u>	<u>바로 위</u>
<u>급인</u> 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	<u> 수급인</u>
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	
지 아니하다.	<u>.</u>
② 제1항에 따른 <u>직상 수급인</u> 의	② <u>바로 위 수급인</u>
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를 말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하수급인이 대중문화예술인	3
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	
프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	
대하여 제1항에 따른 <u>직상 수급</u>	<u>바로 위 수</u>
<u>인</u> 이 공탁·보증 등 도급금액의	<u>급인</u>

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한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. 제35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 제35조(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) 계)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 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 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 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 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 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 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 ----- <u>계속</u> 진행할 수 차를 속행할 수 있다. 다만, 양 있다. ---수인 ·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 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양 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 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